

[사법농단 ISSUE PAPER ②]

사법행정권 남용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2018. 6. 28. (목)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3.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라. 평가

4.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 1) 공동학술대회 무산·축소를 위한 이규진 상임위원의 행위
- 2) 행정처의 중복가입 해소 조치

라. 평가

사법행정권 남용

-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1. 들어가며

2017. 2.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로 발령 받은 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 위원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1차 진상조사위원회, 2차 추가조사위원회, 3차 특별조사단의 조사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어졌다. 그 결과 1, 2차 조사위원회의 발표와 달리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과 특정 연구회, 법관들의 익명게시판 등을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해왔음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재판관 재판을 정치권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하에서는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가 행정권을 남용하여 특정 판사와 연구회, 법관들의 자유로운 익명 게시판을 사찰하고 사법행정위원회와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 2014년

- 8. 8. 서울중앙단독동향보고 [49]
- 9. 22. 단독판사회의 결과 보고 [54]

◆ 2015년

- 2. 14.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 보고 [344]

- 2. 15.(추정) 인터넷 법관 익명 게시판 관련 검토 [355, 356]
- 2. 21. 인터넷 법관 익명 게시판 관련 검토 [186]
 법관 익명 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 [187]
 법관 익명 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 [188]
- 2. 27. 이사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이판사판게시글 초안) [26]
- 3. 2.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27]
- 3. 3.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28]
- 3. 9.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 방안 검토 [29]
- 3. 12.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 [50]
 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보고(김○○) [189]
- 3. 17. 단독판사회의 관련보고 [51]
 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보고(김○○) [190]
- 4. 6. 이사야 익명 카페 동향 보고 [30]
- 7. 24. 익명카페 설득 논리 및 대응방안 검토 [33]
 카페 설득 논리 및 대응책 [34]
- 8. 11.(추정) 인사모 1회 모임 정리 [8]
- 8. 11.이후(추정) 새로운 소모임의 구성 알림 및 경과 보고 [11]
- 8. 13. 차성안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37]
- 8. 14. 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 조치 [31]
- 8. 15. 차장 지시사항(이판사판 야단법석) [32]
- 8. 18. 차성안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318]
- 8. 19.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방향(대외비) [1]
- 8. 23. 인사모 대응방안 종합[박○○] [180]
- 8. 24.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대외비) [2]
- 9. 15.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3) [4]
- 9. 17. 민판연 대응방안 검토 [17]
- 9. 21. 차성안 판사 언론사 기고 관련 검직 허가 [45]
 차성안 [319]
- 9. 22. 차성안 판사 시사인 투고 관련 대응방안(김○○)(대외비) [38]

차성안 판사 시사인 칼럼 두고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320]
차성안 판사 [321]

9. 30.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167]
*별지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등 인사조치가
헌법 제 106조1항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부

◆ 2016년

2. 2. 송오섭 판사 건의문 검토 [19]
2. 5. 인사모 1월 모임 논의 정리(평택지원 이○○판사) [9]
[인사모] 판사의 사법행정참여방안 1월 모임 후기 (평택지원 이○○판사) [10]
2. 24.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229]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325]
3. 7.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방안(대외비)[김○○] [46]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방안 [322]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방안(대외비)[김○○] [191]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검토 [307]
3. 8.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16]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대외비)+1 [334]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차장님 수정) [335]
3. 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 [281, 282]
3. 14.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운영 측면 검토) [323]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 [350]
3. 15.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28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임종현 수정) [283]
3. 2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단 [326]
3. 24.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 [192]
서울중앙지법 현안 관련 검토 [279]
3. 25. 전문분야연구회 개선 방안 [181]
3. 26. 서울중앙 수석부장판사 재편 방안 [193]

- 3. 28.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327]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최종)[김○○] [185]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328]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최종) [402]
- 4. 2.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 [329, 332, 40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1(박○○ 부장님) [333]
- 4. 4.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33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검토 [352]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검토+1 [401]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송부용)(인사실) [299]
- 4. 5. 사법행정위원회 안건 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 [20]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편 실행방안 [194]
- 4. 6. 차성안 판사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 [39]
- 4. 7.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논의 보고(대외비) [6]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5]
 전문분야연구회 개선 방안(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검토) [12]
 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인사모 관련 추가)[박○○] [182]
 전문분야 연구회 일반 개편 방안 [277]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284]
 전문분야연구회 일반 개편방안 [285]
- 4. 8.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21]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차장의견반영)[심⊗⊗] [22]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보고(대전지방법원)[차○○] [55]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282]
- 4. 11.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응과 향후계획 [353]
- 4. 12.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편 실행방안(수정)[노○○] [195]
- 4. 15.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추가 정책 결정 필요사항 검토[심⊗⊗] [23]
- 4. 18.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현황 및 전망[김○○] [47, 196]
- 5. 13. 서울중앙 단독판사회 연구반 개요-가칭 충실한 재판연구반 [199]

- 5. 26. 문제 법원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향후 계획 추가)[김○○] [170]
- 5. 31. 미디어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 [309]
- 7.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 [324]
순회 간담회 정례화 방안 [399]
- 7. 25. 순회 간담회 정례화 방안[박○○] [161]
- 8. 24.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354]
- 9. 22.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경과 보고[김○○] [48]
- 11. 10. 사법행정위원회 성과분석 및 향후 운영방안 (기초검토)[김○○] [25]

◆ 2017년

- 1. 12. 인사모 대응 방안(4) [7]
- 1. 16.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대외비) [314]
- 1. 24.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 검토 [312]
- 2. 6. 중복가입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13]
중복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양형실장님 수정) [316]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초안) [337]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1
- 2. 7. (전정국 의견 반영) [338]
- 2. 10. 중복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 안내말씀[이규진] [14]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2
- 2. 13. [전문재판부 추가] [15]
- 2. 15. 중복가입 해소 조치 관련 대응 논리 [340]
- 2. 16. 중복가입 해소 조치 관련 대응 논리 [315]
중복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추가 안내 말씀(박○○) [317]
전문분야연구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계획 등에
- 2. 20. 대한 안내 말씀 [18]
- 3. 8. 이탄회 판사 관련 정리
- 3. 26.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참관보고 [398]

◆ 작성일 미상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인사실 송부용) [297]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343]

1633_인사모%201월%20모임%20논의%20정리%20내용(1) [270]

사법행정위원회_추천법관_검증(송부용) [298]

57452_송순순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342]

우리법연구회 회원 분석 [394]

박○○ 판사의 향후 동향 [393]

박○○ 판사의 향후 동향(1) [394]

3.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가. 사안의 개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소모임으로, 국가정보원이 경력 법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일종의 사상 검증)는 언론 보도에도 침묵하는 법원 분위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판사들이 모인 것을 계기로 2015. 7. 만들어졌다.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사모는 처음부터 현안인 상고법원이나 사법 관료화 등 사법제도를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었다.

인사모가 결성되자 박병대 처장은 인권법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모임으로 보이니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규진은 2015. 8. 19. 이들이 “법관의 업무 부담 개선, 상고법원 설치 반대 등 대법원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우려”를 인사모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방향’ 문건을 작성해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했고, 주례회의에서 논의했다.

인사모는 바람직한 합의부 조직과 운용, 사실심 충실화,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법관 인사 이원화와 고법부장 제도 방향 등 다양한 사법행정의 이슈들을 논의했는데 이런 점 때문에 계속 행정처의 주시 대상이 되었다. 임종헌 차장은 대응 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은 2016. 3. 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보름 뒤인 2016. 3. 15. 박상언 기획조정심의관은 인권법연구회를 자연적으로 와해시키는 방안으로 다른 판사 모임과 중복 가입을 금지하는 중복가입해소조치를 내용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임종헌 차장, 이민걸 기초실장에게 보고했다.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 새로운 소모임의 구성 알림 및 경과보고

인사모 1, 2차 예비모임, 1차 정식모임의 참석자와 논의 주제, 논의 결과 등 코트넷 게시판에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내용을 넘어서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법관과 발언 내용)과 취지, 모임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에 합류한 법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간략하게 기재되었다.

◆ 국제인권법연구회-1(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대외비) [1]

2015. 7. 초순경 박병대 처장이 당시 인권법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를 챙겨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데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했다. 인권법연구회 성격을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기재하였다. 인사모 활동이 윤리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상고법원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우려’를 문제점으로 지적, 대책 마련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연구회 자체 대책’을 제시하였다.

◆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방안(대외비) [2]

인사모 2차 예비모임에서의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결과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된 이후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인사모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면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검토하며 단계적 접근방식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개편방안 [16, 334, 335]

임종헌 차장이 김☆☆ 심의관에게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세부목차까지 알려주면서 기조실에서 작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및 인권법연구회의 과잉 성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기재하였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검토 [281, 282, 287, 291]

2016. 3. 초순경 임종헌 차장이 김●●●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한 데 따라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 보고한 것으로, 인권법연구회의 핵심 그룹을 추정하면서 주로 우리법연구회 회원 또는 운동권 경력 있는 법관들이라고 기재하였다. 문건 말미 핵심 회원 명단을 첨부. 국제인권법과 무관한 사법행정 논의들을 진행하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인사모 핵심그룹이 김명수 당시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거나 측면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며 이를 전문분야를 이탈하여 사법행정에 개입하는 문제 상황으로 분석했다. 이는 핵심 회원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인사모 폐지 및 관리를 통한 인권법연구회 정상화’를 제시하였다.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시작 전 인사모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인사모 폐지 방안은

연구회 전반 및 분과 재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시하였다. 폐지방안으로 자발적 해산부터 행정처 폐지권고 및 회장 수용의 안의 네 가지를 상정하면서 단계별 시도를 검토하고 인권법 연구회 정상화 방안 기재 중에는 핵심 회원에 불이익 부과(핵심회원에 대한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검토 [280, 283, 286, 288, 289, 292]

281번 문건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인사모 폐지 방안’ 및 ‘인권법연구회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역효과 내지 부작용 등을 평가하여 분석하였다. 자진해산 권유와 자체적 해결이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검토했다.

◆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181]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앞서 본 335번 문건의 완성본에 해당하며, 박■■■ 심의관이 기초실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작성하여 임차장에게 보고하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이 법관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동하는 정황이 감지된다는 등의 이유로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련하여 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전문분야연구회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 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으로 ①다수 법관들의 여론 분출의 장이 될 수 있는 전문분야연구회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미디어 연구회를 신설하는 방안, ②실질적으로 인권법연구회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는 ‘중복가입자 정리’방안 시행, ③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④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에 대해서는 장점과 시행에 따른 인권법연구회에 미치는 위축 효과분석 등을 상술하며 인사모의 자연소멸을 목표로 하는 대응방안의 로드맵까지 예시하였다.

◆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논의보고(대외비) [6]

인사모 7차 정식모임을 앞두고 이규진 상임위원이 작성하여 고영한처장, 임종헌 차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인사모 설립 경과 및 그간 모임 활동 내역을 기재했다. 이규진 상임위원이 2016. 4. 3. 인사모 신입 회장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 부장판사와 오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인사모가 연구회 내 잔존하는 경우 커뮤니티 관리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미디어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전략 [309]

181, 12번 문건에서 제시한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방안에 대한 후속 문건으로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라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특정 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행 연구회 판도에 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9월 이전에 ‘미디어 분야 연구회’가 설립 완료 되도록 행정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문건 말미 시기별 시행방안을 기재한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인사모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의 처사는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 7. 경 예비모임부터 2015. 9. 경 정식 첫 모임까지 집중적으로 동향 파악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5. 8. 경부터는 처장 주례회의, 실장회의에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윤리감사관실에 인사모 개설에 대한 윤리규정 위반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또한 인사모가 상고법원 등 대법원 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외부에 표명할 것을 우려하여 연구회 내 소모임에서 인사 등 사법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인사모 커뮤니티 외 활동을 권유한다는 취지로 행정처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2016. 3. 초순경에는 임종헌 차장이 김●● 인사총괄심의관에게는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조실에는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각 보고문서가 작성되었다. 인사모의 자연소멸을 목표로,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검토되었다. 2016. 3. 24. 경에는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 중 최우선 방안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고려, 세부 시행방안까지 검토를 마쳤으나, 그 무렵 출범한 사법행정위원회 활동 및 법관 사회 반발 등을 감안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더 이상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1, 2차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는 2017. 4. 7. 법원행정처장에게 의혹과 관련된 문서·이메일의 확보를 위하여 임종헌 전 차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6년도 기획 제1심의관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은 ①확인하고자 하는 의혹의 문서나 이메일을 생성하고 관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작성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처장이 위 요청을 수락할 권한이 없고, ③법원행정처 문서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문서들이 다수 있음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이를 강제로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된 자료만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한정된 자료만으로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1,2차 조사위원회는 부당한 견제나 압박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단정적으로 내렸으나, 3차 조사에 이르러 많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특정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종헌 차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에서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 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등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바, 문건 작성의 초기 단계에서 일종의 아이디어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인사총괄심의관실 심의관들이 공정성에 현저한 의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다. 아울러 임종현 차장이 인사총괄심의관실에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방안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자체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라. 평가

특별조사단은 이전 조사에서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특히 물적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 감사위원회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의 의견 청취도 고려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에 있어서 추가로 확인된 사실에 대한 검토 요지를 살펴보면 여전히 자체 조사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조단은 인사총괄심의관실로부터 회신자료 외 추가 요청사항에 대하여 인사상 기밀에 속하거나 개인정보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신을 받은 후, 회신과 대면조사 등의 소극적인 검토만을 진행했다. 이후 공개된 문건 외에 언급된 판사들에 대한 선발성 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부과나 인사권 남용에 대한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러한 특조단의 태도는 보고서 서언에서 언급한 이 시대 국민들의 보편적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물적 자료 조사에 있어서 검색 키워드를 한정하고, 법원 자체 기술력 부족으로 복구하지 못한 파일 및 강제수단이 없어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한 파일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특조단의 결론은 인사상 불이익 존재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철저한 사실 확인과 수사 및 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4.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2016. 12. 경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연구회)내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이 주축이 되어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법관 인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논의하자 12. 24. 경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17. 1. 3. 실장회의에서 연구회의 공동학술대회 추진 경과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메모를 중심으로 간략히 1차 보고하였다. 이후 이규진 상임위원은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1)’,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2)’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2017. 1. 13. 처장 주례회의에서 대책으로 보고하였다.

2017. 1. 23.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를 2017. 3. 25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7. 1. 24. 연구회 기획팀장인 이탄희 판사에 게, 이탄희 판사 등 연구회 회원 2명의 심의관 추천을 거론하며 공동학술대회가 법원 내부 행사로 치러지도록 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확정된 이후에는 기조실에서 ‘공동학술대회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 방안’과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중기 방안’으로 나뉘어 논의되었고, 중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중복 가입 해소 조치¹⁾, 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인사모 고립 내지 견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그 중 중복 가입 해소 조치는, 2016. 3. 경 인사모를 견제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행정처에서 이미 검토가 끝난 방안이었으나 법원 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이 보류되고 있던 중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연구회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확정하자 2017. 2. 10. 처장 주례회의에서 그 시행을 결정하였다. 이후

1)

2017. 2. 13.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코트넷에 중복가입해소 조치를 공지, 실행하였다.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5번

인사모와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이하 이사야)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기 전에 일종의 어용 연구회(사법국제화연구회, 법원,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를 신설하여 법관 사회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였다. 중복가입의 혜택을 인권법연구회가 최대 향유하고 있다며, 중복가입해소방안이 ① 법관들 상대 중복가입자 정리 명분 있고, ②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하며, ③ 인사모 해소를 위한 유효한 우회적 압박 카드이며, ④ 사전 준비의 부담 無등의 여러 장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사모의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 간의 분리 방안을 도모하며, 내부 신망 높은 고법부장들의 집단 탈퇴 명분과 시기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법연구회와의 관련성 등을 문제제기함으로써 상당수 법관이 모임을 외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사모 대응 방안[4]-7번

국제인권법 소모임 “인사모”가 연세대와 공동학술행사(‘법관인사 이원화제도의 폐지’, ‘고등부장 제도의 문제점’,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집중’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분석)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적 과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 작성자는 법원행정처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후

속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서는 안 될을 강조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관 인사문제’라는 주제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밝히며, 회장은 “판사들이 법관 인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를 전제로 핵심 세력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해당 문건은 소모임 운영자들이 행사 목적·발표자·주제·일시·장소까지 다 정한 후 회장과 운영위원회를 ‘승인’의 절차적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며, 과거 학생/사회운동 및 진보정당에서 NL 계열이 보여주었던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행태(예: 한총련, 통진당 등)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시 법관 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되며, 취소권자인 행정처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 검토-312번

당해 문건은 공동학술대회가 사법부 독립 및 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정치 세력을 활용한 공론화 시도의 일종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사모 주도세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인 법관 간 분리를 1차 공략지점으로 삼아야 하며, 일반 법관을 설득할 논리 개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특정 연구회(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정치적 목적 하에 전문분야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고 일반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규정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둘러쌓인 연구회 주류 성향 선배 법관들이 일거에 탈퇴할 경우 행정처가 배후에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분산 탈퇴하되, 다수가 탈퇴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다수의 법관들이 인사모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 내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사모 활동 제재를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인사모 활동 지속할 경

우 전문분야 국제화연수 혜택도 박탈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인사모로 인해 국제인권법 일반 회원 법관들이 가시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면 인사모측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복가입자 해소 조치를 이행할 경우 국제인권법커뮤니티 회원 중 50%가 넘는 200명 이상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인사모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논의가 시작되자 이규진 상임위원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인사모 대표, 이 모 부장판사 등에게 외부기관과의 법관인사제도 논의는 부적절하고 연구회 내 소모임이 연구회 명의의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1차 경고를 한 후 실장회의에 보고하였다. 이후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1), (2) 문건을 작성하여 처장 주례회의에 보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안(인사모 운영위원회 등을 회장이 일대일로 만나 학술대회를 부결시키도록 함), 2안(국제인권법연구회 대신 인사모의 명의로 공동주최 함), 연기 안(시기를 7~8월로 연기), 자체 행사 안 등으로 다소 유화적인 수준의 대책이었다.

그러나 연구회가 긴급 운영위원회, 온라인 운영위원회를 연속으로 열며 학술대회 시기를 3월로 확정하자 행정처는 중복가입해소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아예 연구회 자체를 와해시키려 하였다. 인사모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논의하기 약 9개월 전인 2016. 3.경부터 법원행정처는 전문분야연구회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인사모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명분, 실리 모두를 충족하는 중복가입해소 조치를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마련하였으나 그 시행은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다 연구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려하자 연구회를 와해하기 위해 중복가입해소조치의 시행을 결정하게 되는데, 커뮤니티 관리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하는 것이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사전 검토에 따라 전산정보국장이 코트넷에 공지를 함으로써 시행이 되었다.

2016. 3. 25. 박■■■ 심의관이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에 의하면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가입 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 가입으로 보아 탈퇴 처리를 하면 가장 늦게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수가 431명에서 204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는 2012. 1.경 행정처 기조실에서 전문분야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1) 공동학술대회 무산·축소를 위한 이규진 상임위원의 행위

이규진은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법원행정처의 업무와 무관한 직위에 있으면서 연구회 사안뿐만 아니라 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난 여러 사건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식 보직 명칭도 아닌 양형실장이라는 명칭을 쓰며 행정처 회의에 참여하였다.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모 대표, 이 모 부장판사 등에게 공동학술대회의 부적절성을 전달하고 연구회 기획팀장인 이탄희 판사에게, 이탄희 판사 등 연구회 회원 2명의 심의관 추천을 거론하며 공동학술대회가 법원 내부 행사로 치러지도록 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이규진의 행위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지위에서는 있을 수 없

는 행태인 바, 이규진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시 내지는 묵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윗선을 밝혀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 행정처의 중복가입 해소 조치

3번의 조사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인사모를 와해시키기 위해 중복가입해소 조치를 시행한 것은 명백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고 나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즉, 중복가입 해소 조치는 인사모라는 연구회 내 소모임을 행정처가 와해시키려는 단일 목적으로 방안을 검토,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산정보국장의 명의로 공지하는 것이 행정처의 개입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였다.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1~16번, 18번, 180~182번, 277~278번, 280~285번, 312번, 314~317번, 334~340번, 398번 파일이 모두 이 사안과 관련이 있는 문건으로 약 1년에 걸쳐 42개의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되었는바, 이 문건들을 작성한 이규진, 박■■■ 심의관 외 성명불상자와 이를 보고 받은 임종현 당시 차장, 박병대 처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모 구성원들의 학문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복 가입 해소 조치와 관련하여 당시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므로 어느 시점에 알게 되었는지, 보고를 어느 단계부터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여 개입의 정도를 밝혀야한다. 이 사안은 누가 보아도 사법행정권의 남용 내지는 직권남용 사안임이 명백하여 하급자 선에서 책임의 고리를 끊기 위해 경고를 하는 모양새만 취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고를 하게 된 배경, 단순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인지 경고로 인해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또한 조사가 되어야한다.

라. 평가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1, 2, 3차 보고서 모두 이 사안에 대하여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였다. 법관들로 구성된 전문분야 연구회에서 법관의 인사제도에 대해 학술대회를 개최하려 했다는 이유로 대회를 축소, 무산시키려하고 여의치 않자 아예 소모임 자체를 와해하려고 했던 이번 사안은 법원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하는 사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사안이라 하겠다.

이 과정에서 행정처가 시도했던 방법 또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 자부하는 판사들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치졸한 것이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핵심세력이라 칭한 후 다수의 판사들과 분리, 고립시켜야한다며 이른바 조직 내 왕따 전략을 세우거나, 소모임 운영자들이 회장과 운영위원회를 ‘승인’의 절차적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인사모 내부 갈등을 야기하려 하고, 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시켜 다수의 법관들로 하여금 인사모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 내지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을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며 버젓이 자행하고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누군가가 오늘도 법대에 앉아 심판을 하고 있는 게 법원의 현실이다. 이런 법원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러한 행위들이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다.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법원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판사들로 구성된 연구 모임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연구활동의 일환인 학술대회를 무산시키고 조직을 와해하려 한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은 관련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조속히 징계하고 관련자들은 응당의 책임을 지고 자진하여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